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도 감사원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혜 진

목 차

제1장 개 요 / 1

1. 총 괄	1
2. 세입예산안 현황	3
3. 세출예산안 현황	4
4. 예산안의 주요 특징	6
가. 2026년도 감사원 소관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 사항	6
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예산안 내역	7

제2장 세부사업별 검토의견 / 8

1. 성과계획서: 국가결산검사 업무 실적 반영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필요	8
2. 기본경비: 집행실적을 고려한 상용임금 예산의 편성 필요	11
3. 기본경비: 에너지저장장치(ESS) 운용을 통한 전기요금 절감 노력 필요	15
4. 기본경비: 지방사무소의 공공청사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 필요	19
5. 적극행정 지원: 감사권익보호관 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22
6.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사업성격에 맞는 세부사업 및 비목으로의 예산 편성 필요	25
7. 국제교류협력 강화: 국제기구 외부감사 수행 관련 세입·세출예산의 명확한 반영 필요 ..	29

제1장 개 요

1. 총 괄

- 2026년도 감사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8억 1,500만원, 세출예산 1,440억 9,000만원임.
-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7억 7,000만원의 5.8%에 해당하는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416억 5,600만원의 1.7%에 해당하는 24억 3,400만원이 증액됨.

<2026년도 감사원 소관 예산안 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결산	2025예산		2026예산안		증 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
세입	772.1	770	770	815	815	45	5.8
세출	140,717	141,656	146,934	159,143	144,090	2,434	1.7

- 감사원은 당초 1,591억 4,300만원의 세출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인건비에서 32억 8,800만원, 기본경비에서 7억 4,200만원, 주요사업비에서 110억 2,300만원이 각각 감액 조정되어 총 150억 5,300만원이 감액된 총 1,440억 9,000만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감사원 소관 세출예산안 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예산		2026예산안		증 감 (B-A)
	본예산	추경	요구(A)	조정(B)	
합 계	141,656	146,934	159,143	144,090	△15,053
인건비	97,994	97,994	104,854	101,566	△3,288
기본경비	13,464	13,464	14,510	13,768	△742
주요사업비	30,198	35,476	39,779	28,756	△11,023

2. 세입예산안 현황

- 2026년도 감사원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8억 1,5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 7억 7,000만원 대비 5.8%(4,500만원)가 증액된 것임.
-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교육수수료 등 수입대체경비수입 6억 3,600만원, 국제형사재판소 외부감사 수수료 수입 등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억 1,600만원, 지방 관사 임차보증금 환수 및 기타 반납금 등 경상이전수입 5,000만원, 토지 및 건물 대여료 등 재산수입 1,300만원이 각각 계상됨.

<2026년도 세입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 감		내 역
	본예산 (A)	추경		금액 (C=B-A)	비율 (C/A)	
합 계	770	770	815	45	5.8	
수입대체경비수입	618	618	636	18	2.9	교육수수료, 시설사용료 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07	107	116	9	8.4	국제형사재판소 외부감사 수수료 수입
경상이전수입	30	30	50	20	66.7	지방사무소 관사 보증금 환수 및 기타 반납금 등
재산수입	15	15	13	△2	△13.3	토지대여료: 1 건물대여료: 12

3. 세출예산안 현황

○ 2026년도 감사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1,440억 9,0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1,416억 5,600만원 대비 1.7%(24억 3,400만원)가 증액된 것임.

- 편성내역을 사업별로 보면,

인건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6% 증액(35억 7,200만원)된 1,015억 6,600만원이 계상됨.

기본경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 증액(3억 400만원)된 137억 6,800만원이 계상됨.

주요 사업비는 감사활동경비 150억 6,500만원, 적극행정 지원 3억 1,600만원,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11억 9,900만원, 전산운영경비 103억원, 국제교류협력강화 9억 2,000만원, 감사교육원 수입대체경비 5억 4,800만원, 감사연구활동경비 4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8% 감액(△14억 4,200만원)된 287억 5,600만원이 계상됨.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인건비 35억 7,200만원(3.6%), 감사활동경비 58억 3,100만원(63.1%)이 본예산 대비 각각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8억 1,300만원(△40.4%), 전산운영경비 58억 1,100만원(△36.1%)이 각각 감액되었음.

<2026년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A)	추경		금액 (C=B-A)	비율 (C/A)
합계		141,656	146,934	144,090	2,434	1.7
인건비		97,994	97,994	101,566	3,572	3.6
기본경비		13,464	13,464	13,768	304	2.3
주요 사업 비	소계	30,198	35,476	28,756	△1,442	△4.8
	감사활동경비	9,234	14,512	15,065	5,831	63.1
	적극행정 지원	335	335	316	△19	△5.7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2,012	2,012	1,199	△813	△40.4
	전산운영경비	16,111	16,111	10,300	△5,811	△36.1
	국제교류협력강화	1,025	1,025	920	△105	△10.2
	감사기구 역량강화	270	270	-	△270	순감
	감사교육원 수입대체경비	676	676	548	△128	△18.9
	감사연구활동경비	535	535	408	△127	△23.7

4. 예산안의 주요 특징

가. 2026년도 감사원 소관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 사항

- 2026년도 감사원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총 6개 세부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2025년 본예산 대비 23억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고, ② 개발도상국 감사기구 직원 대상 초청연수 사업 수행을 위한 “감사기구 역량강화(ODA, 1135-323)” 세부사업을 지출 효율화 및 예산 절감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로 이관하였음.

<2026년도 감사원 소관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비목 또는 내역사업명	2025 본예산	2026 예산안	구조조정 실적	구조조정 유형※	비고
감사활동경비	일반수용비	1,697	1,435	△262	Ⅲ	
	연구용역비	1,600	1,200	△400	Ⅲ	
	공공요금 및 제세	23	20	△3	Ⅲ	
	자산취득비	20	10	△10	Ⅲ	
적극행정 지원	일반수용비	138	124	△14	Ⅲ	
	국내여비	106	95	△11	Ⅲ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직장어린이집 운영	303	241	△62	Ⅲ	
	본원	1,138	500	△638	I	
	교육원	571	49	△522	I	
국제교류협력강화	국제기구 감사인 진출	92	41	△51	Ⅲ	
	주요국 감사교육원 협력	25	21	△4	Ⅲ	
	ICC 및 기타 국제교류 관련 일반수용비	107	99	△8	Ⅲ	
감사기구 역량강화	-	270	-	△270	Ⅱ	사업 이관
감사연구활동경비	일반수용비	175	150	△25	Ⅲ	
	정책연구비	190	170	△20	Ⅲ	

* 자료 : 감사원 (수정)

※ 사업성 경비(I유형 : 사업 우선순위 조정, II유형 : 제도 개선), 경상비성 경비(III유형 :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감)

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예산안 내역

- 2026년도 특수활동비 편성액은 15억 1,900만원으로 2025년도 추경액¹⁾ 7억 5,900만원 대비 100.1%(7억 6,000만원)가 증액되었고, 특정업무경비 편성액은 43억 4,000만원으로 2025년도 추경액 대비 4.7%(2억 1,600만원)가 감액되었음.

<2026년도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편성 내역>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 예산안 (B)	증감 (B-A)	(B-A)/ A
		본예산	추경(A)			
특수활동비 (230-00)	1,519	-	759	1,519	760	100.1
· 감사활동경비	1,519	-	759	1,519	760	100.1
특정업무경비 (250-03)	4,240	37	4,556	4,340	△216	△4.7
· 기본경비	32	37	37	33	△4	△0.1
· 감사활동경비	4,208	-	4,519	4,307	△212	△4.7

1) 2025년도 예산 편성시 감사활동경비(1131-303) 세부사업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가 전액 감액되었으나, 2025.5.1. 제1차 추경 예산에서 특정업무경비 45억 1,900만원을 증액하고, 2025.7.4. 제2차 추경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 7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제2장 세부사업별 검토의견

1. 성과계획서: 국가결산검사 업무 실적 반영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필요

- 2026년도 감사원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건전재정 운용,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및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한다.”라는 전략목표 1개를 수립하고, “체계적인 감사활동 및 지원체제를 기반으로 국가회계질서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여, 공공부문의 효율성·책임성을 제고한다.”라는 프로그램 목표 1개를 설정하였음.

<2026년도 감사원 성과계획서 중 전략 및 프로그램 목표>

종 류	내 용
전략목표	I. 건전재정 운용,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및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한다.
프로그램목표	I-1. 체계적인 감사활동 및 지원체제를 기반으로 국가회계질서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여, 공공부문의 효율성·책임성을 제고한다.

* 자료 : 감사원

- 또한, 감사원은 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표를 다음과 같이 ①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 및 ② 공직비리 적발 실적, 2개²⁾로 설정하고 있음.

- 이러한 성과지표 및 측정 산식은 주로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6년도 감사원 성과계획서 중 성과지표>

(단위: 점, 억원)

지표명	가중치	측정 산식	2026년 목표치
①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	0.5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금액(변상판정, 시정요구 등 금액) + 기대효과금액 (예산절감 금액 ³⁾ + 수입증대 금액 + 국민편익 금액 ⁴⁾ + 재산증가 금액 + 지출합리화 금액 ⁵⁾)	30,000
② 공직비리 적발 실적	0.5	(중징계 요구 인원×4)+(경징계 요구 인원×3) +(통보 인원×3) + (고발·수사요청 인원×4)	1,000

* 자료 : 감사원 (수정)

- 그러나, 감사원은 「대한민국헌법」 제97조·제99조 및 「감사원법」 제20조⁶⁾에 따라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이외에도 국가결산검사

- 2) 성과계획서 수립시 프로그램이 1개인 부처는 2개 성과지표만 적용함.
- 3) 예산절감액: ① 새로운 공법, 시공기술의 개발 ② 비경제적인 설계의 변경 ③ 물품구입 등 계약방법의 개선 ④ 매입대상 품목, 규격 등의 대체 ⑤ 물품의 재고관리 등 보관방법 개선 ⑥ 단가, 시간, 수량 등 기준 제정 또는 개정 ⑦ 기구 및 인력운용의 합리화 ⑧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의 억제 ⑨ 기타 전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것 (자료: 감사원)
- 4) 국민편익금액: ① 가격사정의 합리화 ② 포장, 용기 등의 규격 개선 ③ 효율, 이자율의 개정 또는 적용방법의 개선 ④ 요금 또는 세금부과 등의 관계규정을 개정 ⑤ 업무처리절차 개선 ⑥ 각종 증명의 사용기간 연장 ⑦ 기타 전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향후 국민편익이 기대되는 것 (자료: 감사원)
- 5) 지출합리화금액: 우선순위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조정, 불요불급한 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지출을 억제하여 다른 재원으로 사용 가능하게 된 금액 (자료: 감사원)
- 6) 「대한민국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원법」 제20조(임무)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

(「국가재정법」 제60조 등⁷⁾)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므로, 감사원은 성과지표의 설정 및 측정에 있어 각 소관 업무를 전체적으로 고르게 반영하기 위하여 성과계획서 수립시 국가결산검사 업무 실적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설정할 필요가 있음.

제21조(결산의 확인) 감사원은 회계검사의 결과에 따라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확인한다.

7) 「국가재정법」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본경비: 집행실적을 고려한 상용임금 예산의 편성 필요

- 감사원은 기본경비(1111-251) 내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보수로 상용직(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등)⁸⁾ 근로자의 보수를 반영한 상용임금(110-03목)과 임시직⁹⁾ 근로자의 보수를 반영한 일용임금(110-04목)을 편성하고 있음.
- 2026년도 상용임금은 2025년도 예산 41억 2,900만원 대비 1억 5,800만원(3.8%) 증액된 42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일용임금은 2025년도 예산 6,400만원 대비 2,600만원(40.6%) 증액된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6년도 상용임금·일용임금 편성내역>

(단위: 백만 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B)	증감	
				(B-A)	(B-A)/A
상용임금	3,833	4,129	4,287	158	3.8
일용임금	196	64	90	26	40.6

* 자료 : 감사원

8)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함(「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및 제5조).

9) 법령에 채용근거가 없거나 채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각 중앙관서의 장과 고용계약을 통하여 채용·근무하는 근로자),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p.12).

- 2026년도 상용임금 예산안은 전 기관 공통으로 처우개선을 3.8%를 반영한 것으로, 2025년도와 동일한 106명의 무기계약직 등에 대하여 41억 6,700만원, 사회복지무요원 인건비 1억 2,000만원임.

< 2026년도 상용임금 편성 단가 및 편성액 >

(단위: 백만원)

상 용 임 금	산 출 근 거	4,287
1. 무기계약직 등 인건비(106명)		4,167
가.봉급	2,339,880원*12월*106명=	2,976
나.초과근무수당	311,648원*12월*106명=	396
다.명절휴가비	1,410,928원*2회*106명=	299
라.성과급	1,347,768원*2회*106명=	285
마.정액급식비	140,000원*12월*106명=	178
바.연가보상비	311,648원*106명=	33
2. 사회복지무요원 인건비	1,250,000원*8명*12월=	120

* 자료 : 감사원

- 감사원의 최근 3년간 상용임금 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 2022년 34억 5,500만원, 2023년 34억 9,700만원, 2024년 38억 3,300만원임.
- 2025년도 9월 현재 집행액은 31억 7,200만원으로 10월분~12월분으로 8억 9,000만원의 집행이 예상됨¹⁰⁾을 고려하면 2025년도 말 상용임금 집행액은 40억 6,200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10) 초과근무(야간·휴일근무 포함), 연가 사용률 및 결원 등의 사유로 변동할 수 있음.

< 최근 3년간 기본경비-상용임금 결산내역 >

(단위: 백만 원)

	세목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5	상용임금(110-03)	4,129	-	△60	4,069	3,172 (9월말)	-	-
2024	상용임금(110-03)	3,961	-	△105	3,856	3,833	-	23
2023	상용임금(110-03)	3,759	-	△98	3,661	3,497	-	164
2022	상용임금(110-03)	3,670	-	△57	3,613	3,455	-	158

자료 : 감사원

- 또한, 2024회계연도 법사위 결산심사에서는 감사원이 연례적으로 상용임금을 감액 조정하고 일용임금으로 증액 조정하여 집행하는 방식에 대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2025년에도 6월 현재 기본경비 내에서 상용임금 6,000만원을 일용임금으로 조정하였음.

< 최근 4년간 기본경비-상용임금·일용임금 조정내역 >

(단위: 백만 원)

연도	구분	전용 등				금액
		~에서		~으로		
2025.6월	세목조정	기본경비	상용임금	기본경비	일용임금	60
2024	세목조정	기본경비	상용임금		일용임금	105
	전용	인건비	보수		일용임금	31
2023	세목조정	기본경비	상용임금		일용임금	96
2022	세목조정	기본경비	상용임금		일용임금	25

자료 : 감사원

- 따라서 2026년도 상용임금 예산은 그 간의 집행잔액, 감액 조정분 등 집행실적을 고려할 때 전년도 예산액인 41억 2,900만원이 아닌 예산현액 40억 6,900만원에 대하여 3.8%의 인상률을 적용하여 42억 2,300만원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기본경비 : 에너지저장장치(ESS) ~~운용~~을 통한 전기요금 절감 노력 필요

- ‘기본경비(1111-251)’ 중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는 감사원 본원 및 감사교육원 청사 운영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보험료 등의 납부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며,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액 9억 6,500만원보다 1억 2,300만원이 증액(12.7%)된 10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기본경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결산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
기본경비 - 공공요금및제세	1,067	965	965	1,088	123	12.7

* 자료 : 감사원

-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의 65%인 7억 400만원은 전기요금으로, 종로구 소재 감사원 청사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 4억 5,800만원의 20%인 9,200만원을 증액한 5억 5,000만원, 파주시 소재 감사교육원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 9,600만원의 60%인 5,100만원을 증액한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에 대해 감사원은 종로구 소재 청사는 VDI 도입에 따른 서버실 상시 운영과 제1별관 재건축 준공('24년)에 따라 전기료 수요가 급증하였고, 감사교육원은 숙소와 각종 시설 등 내·외부

교육생들의 편의를 위한 전기료 등을 증액한 것에 기인한다는
설명임.

- 또한 최근 3년간 감사원의 전기요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3
년도 5억 8,412만원을 집행하였으나 2024년도에는 7억 2,511만원
을 집행하였고, 2025년도 8월 기준 5억 7,055만원을 집행하였음.

<최근 3년간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		2023 집행액	2024 집행액	2025 예산액	2026(안)
계		888	1,067	965	1,088
종로구 소재 감사원 청사	관서운영 공공요금	1	1	3	1
	전기요금	446	570	458	550
	수도료	64	88	75	85
	전화요금	78	77	84	84
	기타(TV수신료 , 보험료 등)	86	95	127	99
감사 교육원	전기요금	138	155	96	154
	수도료	9	16	23	27
	전화요금	4	4	6	6
	기타(환경개선부 담금, 보험료 등)	62	61	93	82

* 자료 : 감사원

- 한편, 감사원은 2025년도에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를 위한
예산을 7억 3,358만원 편성하였고, 2025년도 10월 현재 에너지 저
장장치(ESS) 설치를 완료하였음.

- 에너지 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는 생산된 전기를 저장장치(배터리)에 저장 후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여 전력사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설비인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11조제5항 및 부칙 제3조11)에 따라 공공기관 중 계약전력이 1,000kW 이상의 기존 건축물은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12)를 의무화하여 피크전력 저감 등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있음.
- 감사원의 경우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최근에 설치함에 따라

1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①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의 실내 조명기기를 별표 6의 연도별 보급목표에 따라 LED 제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주차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방침에 의거 기관의 이전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제외하며, 초·중·고교, 도서관 등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기구 교체 시에는 제1항에 의한 조명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신축, 증축, 개축 시 신규 설치하는 지하 주차장의 조명기기는 모두 제1항에 의한 LED 또는 스마트 LED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2,000kW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 칙 <제2023-161호, 2023.08.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 ESS 설치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이 2023.8.1. 이후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고, 건축허가 신청일이 2023.7.31. 이전인 건축물은 2025.12.31.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공공기관 ESS 설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전력 1,000kW 이상 2,000kW 미만의 기존 건축물(건축허가 신청일이 2023.7.31. 이전인 건축물)은 2025.12.31.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여야 한다.

12) 에너지 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는 생산된 전기를 저장장치(배터리)에 저장 후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여 전력사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설비

현재 에너지 절감 효과는 1%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에너지 절감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임.

<ESS 설치 후 예측된 절감량>

기간(월)	절감전력량(kWh)
2025년 7월	1,421(0.5%)
2025년 8월	1,725(0.6%)
2025년 9월	1,125(0.4%)

※ 2025년 감사원 월평균 전력사용량 : 283,043kWh

자료 : 감사원

- 참고로, 한국에너지공단이 발간한 2024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우수사례집¹³⁾에는 계약전력 및 운영방식 등에 따라 월평균 최대 2,000만원에서 적게는 200만원 수준의 전기요금을 절감한 사례가 소개되고 있음.

13)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공개자료실 <https://www.energy.or.kr/front/board/View10.do>

4. 기본경비 : 지방사무소의 공공청사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 필요

- 기본경비 중 ‘임차료(210-07목)’ 예산은 청사·관사 및 차량 등 시설·장비 임차료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액 11억 8,900만원보다 6,800만원이 증액(5.7%)된 12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주요 내역은 지방사무소 사무실 등 임차료 8억 1,200만원(7.4% 증액), 승용차 등 임차료 4억 4,500만원(2.8% 증액) 등임.

< 2026년도 기본경비-임차료 편성내역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결산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
임차료 (210-07)	1,352	1,189	1,189	1,257	68	5.7
- 청관사	792	756	756	812	56	7.4
- 차량등	560	433	433	445	12	2.8

자료 : 감사원

- 감사원은 2025년 현재 서울시 종로구 및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감사원 청사와 감사교육원 외에도 지방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 2025년 9월말 기준으로 각 지방사무소의 임차사무실 면적 및

근무 인원은 광주 302.4㎡, 부산 448.3㎡, 대구 371.9㎡, 수원 234.7㎡이고 상주 근무 인원은 광주 17명, 부산 18명, 대구 16명, 수원 13명, 대전 26명임.

<2025년도 지방사무소 임차현황>

(단위: ㎡, 명, 천 원)

연도	소재지	전용면적	근무인원	보증금	임차료 (월세+관리비)
2025	광주	302.4	17	100,000	9,426×12월
	부산	448.3	18	-	11,527×12월
	대구	371.9	16	59,686	11,900×12월
	수원	234.7	13	42,839	7,500×12월
	대전	926.0	26	-	-
	계	2,283.3		202,525	487,236

주1 : 2025년 9월말 현재 기준

주2 : 대전사무소의 경우 정부대전청사를 사용하고 있어 별도의 임차료 등이 발생하지 않음.

자료: 감사원

- 감사원은 2026년도 예산안 중 청관사 임차료를 전년 대비 7.4%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그 증액소요는 지방사무실 임차료의 계약가 상승분을 예측하여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매년 임차료 상승분은 예산의 증액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감사원은 민간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지방사무소의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는 공공청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향후 임차료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감사원 지방사무소별 임차기간 현황>

(단위: ㎡)

소재지	임차기간 (계약일-종료일)	면적	임차 형태
광주	'24.1.1. ~ '25.12.31.	302.4	민간 건물 임차
부산	'24.3.1. ~ '26.2.28.	448.3	민간 건물 임차
대구	'25.1.1. ~ '26.12.31.	371.9	민간 건물 임차
수원	'24.7.10. ~ '29.7.9.	234.7	공유재산 사용승인
대전	-	926.0	정부대전청사

자료: 감사원

- 참고로, 기획재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¹⁴⁾은 청사임차에 관하여 임차료 절감을 위하여 공공청사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14)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임차료(210-07), p. 229.>

- 청사임차는 행정안전부의 「'25년 정부청사수급관리계획」상 임차대상 청사로 지정된 범위 내에서 계상
- 신규로 청사를 임차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상의 면적기준 적용
 - 관사 임차료 단가는 해당지역 시장평균 임차료를 범위 내에서 적정 소요계상
- 신규로 청사를 임차하는 경우 도심외 지역 건물, 공공청사 및 지방교육기관 등 유휴건물 활용을 우선 검토하는 등 임차료 절감을 위해 노력
 - 각 중앙관서는 4월말까지 중앙관서·소속기관의 유휴건물을 ‘행정·공공기관 복덕방’에 의무 등록

5. 적극행정 지원 : 감사권익보호관 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 ‘적극행정 지원(1131-304)’ 사업은 적극행정면책, 사전컨설팅, 모범사례 발굴 등의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유도하고 수감자의 권익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액 3억 3,500만원보다 1,900만원이 감액(5.7%)된 3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 중 일반용역비(210-14목)는 감사권익보호관 자문용역비로 2026년도 예산안은 6,6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액인 6,000만원에 비해 600만원 증액되었음.

<2026년도 감사권익보호관 자문용역비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적극행정 지원	218	335	316	△19	△5.7
- 일반용역비(210-14)	60	60	66	6	10.0

* 자료 : 감사원

- 감사권익보호관은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15)을 근거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행정면책 신청 등 의견이나 소명자료를 제출한 소명인(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감사위원회의 등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감사원은 정부법무공단과의 협약에 따라 공단 소속 변호사 1명을 감사권익보호관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연도별 자문용역 건수를 살펴보면 2022년 215건, 2023년 141건, 2024년 93건이며 2025년에는 9월말 기준 150건임.

<연도별 감사권익보호관 자문용역 건수 및 집행액>

(단위: 백만원)

연도	자문용역 건수			지급액(법률자문 용역계약)
	소명	면책	합계	
2022년	193	22	215	54
2023년	113	28	141	54
2024년	80	13	93	60
2025년 9월말	132	18	150	45

* 자료 : 감사원

- 15)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9조(감사소명자료의 제출) ① 감사대상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 등은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행정면책 신청 등 의견이나 소명자료(이하 “감사소명자료”라 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 관련 소명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소명자료와 함께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2조(감사권익보호관) ① 감사원은 관계자 등이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고 관계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사권익보호관을 둔다.
- ② 원장은 감사대상 기관 등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적 식견을 가진 외부 인사 중에서 감사권익보호관을 위촉한다.
- ③ 감사권익보호관은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한 자의 입장에서 감사소명자료를 검토하고, 감사위원회의 등에 배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감사권익보호관 1명이 연간 100~200건 내외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소명·면책건 등을 처리할 경우, 감사권익보호관의 업무에 서면검토뿐만 아니라 소명인과의 면담, 자료보완 요구, 감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하는 업무 등이 포함¹⁶⁾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감사권익 보호의 취지가 형식화될 우려가 있음.
- 또한, 감사권익보호관은 필요한 경우 소명인에게 연락하여 검토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소명인도 필요한 경우 감사권익보호관실에서 보호관과 면담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감사원은 업무 독립성 훼손 우려를 이유로 자료요청 건수 및 면담 건수 등을 관리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감사권익보호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문 건수와 주요 감사 분야를 고려하여 인력풀을 구축·운영하고, 피감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수준을 실질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최소한의 비식별 지표로서 피감사인의 감사권익보호관 면담 건수나 자료요청 건수 등을 관리하는 등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16) 감사원,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사례집」, 2023. p.141

● 감사권익보호관(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를 위촉)은 감사원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이 감사 지적내용에 대하여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하거나 이견(異見)을 제출하는 경우 소명인의 입장에서 이를 검토·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관련 안건이 감사위원회에 상정되는 경우 <u>감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인의 입장을 대변·진술할 수 있습니다.</u> ● 감사권익보호관은 <u>소명인에게 검토에 필요한 추가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소명인은 필요한 경우 감사원 감사권익보호관실에서 <u>감사권익보호관과 면담할 수 있습니다.</u></u>

6.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 사업성격에 맞는 세부사업 및 비목으로의 예산 편성 필요

-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1133-309)’ 사업은 청사 및 노후시설물의 정비를 통하여 감사활동에 적합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20억 1,200만원 대비 8억 1,300만원(△40.4%) 감액된 11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 중에서 감사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2억 4,100만원을 관리용역비(210-15목)로 편성하였음.

<2026년도 감사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업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3,767	2,012	1,199	△813	△40.4
· 감사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294	303	241	△62	△20.5
· 본원 노후시설물 등 성능개선	885	1,138	500	△638	△56.1
· 교육원 노후시설물 등 성능개선	436	571	49	△522	△91.4
· 안전 관련 업무시설 정비	-	-	409	409	-
· 감사인력 운용 개선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사업	1,611	-	-	-	-
· 제1별관 재건축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등	541	-	-	-	-

* 자료 : 감사원

- 감사원 직장어린이집은 기존 노후시설이었던 직원숙소(기숙사)를 개보수하여 2022년 3월에 개원하였음. 당초 어린이집 설치 예산을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세부사업에 편성하였는데, 준공 후 어린이집 운영 예산도 동일한 세부사업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어린이집의 준공이 완료되고 운영을 개시하여 사업의 성격이 시설 개보수에서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세부사업에 운영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타 부처의 경우 어린이집 운영 예산을 보면 시설운영, 시설관리 등의 세부사업에 편성하고 있음.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 타 부처 사업 편성 현황>

부처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비목
국방부	[2242]장병복지지원	[302]군어린이집 운영지원	[210-14]일반용역비
경찰청	[7135]경찰복지증진	[311]경찰복지증진	[320-02]민간위탁사업비
국회	[2031]의회운영지원	[301]인사 및 운영지원	[210-14]일반용역비
법무부	[1333]검찰운영	[300]검찰청시설운영	[320-02]민간위탁사업비
행정안전부	[2231]정부청사시설관리	[302]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320-02]민간위탁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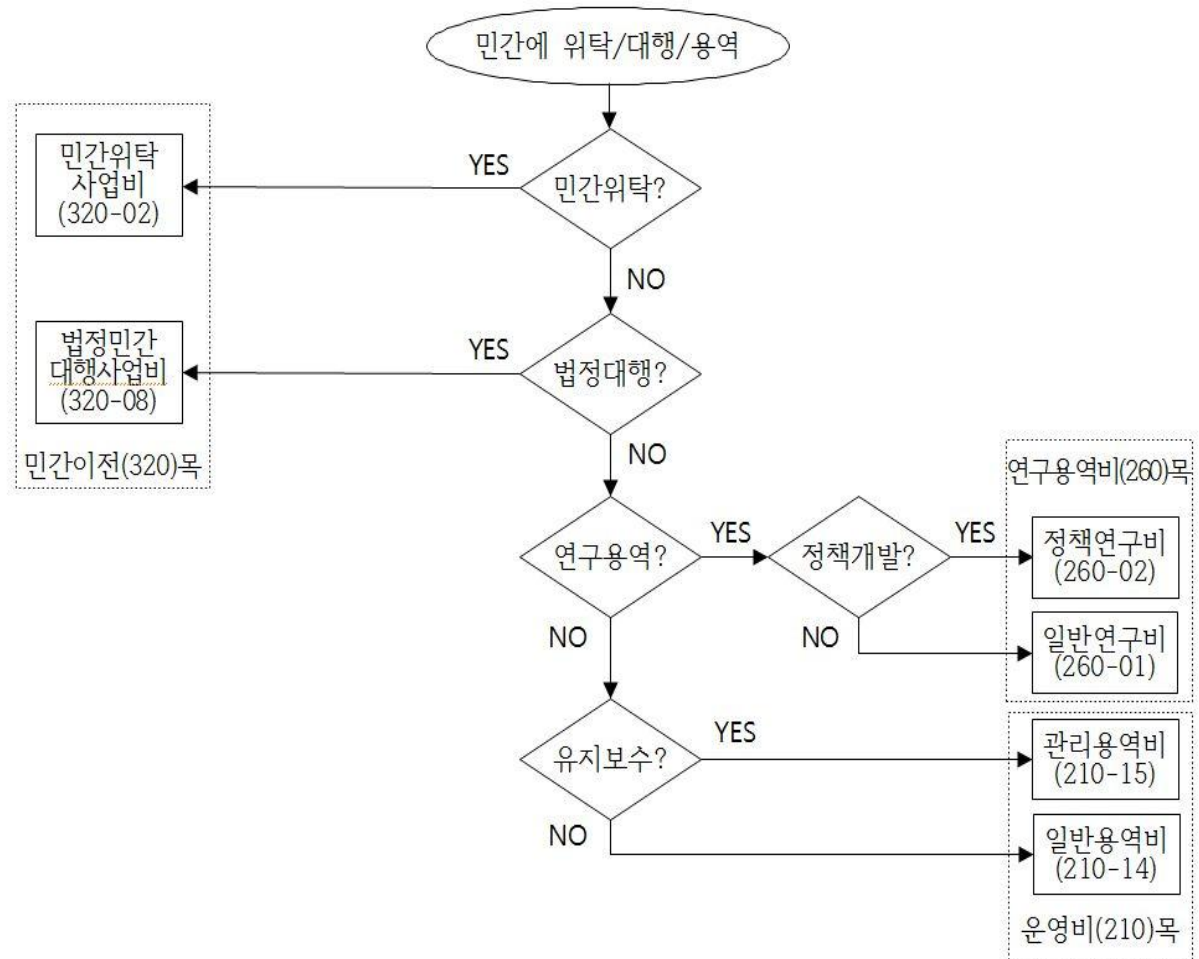
* 자료 : 감사원

-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 예산은 시설물 운영을 위한 새로운 세부 사업을 신설하여 편성하거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운영임을 감안하여 기본경비 세부사업에 편성하는 등 사업 목적 및 성격에 맞는 세부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감사원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는 ○○○보육재단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사업장위탁운영서비스를 내용으로 계약하고 있는데, 이를 관리용역비(210-15목)로 편성하고 있음.
-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관리용역비는 청사의 시설관리 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으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에 대한 위탁계약 사업의 비목으로는 적절하지 않음.
- 감사원은 「영유아보육법」 17)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상의 민간위탁 및 대행 관련 비목 재분류 기준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로 편성함이 바람직함.

17)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민간위탁·대행 관련 비목 재분류 기준>



* 자료 :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37

- 따라서 직장어린이집 운영 예산을 사업의 실질적 성격에 부합하는 세부사업으로 이관하고, 법령에 근거한 민간위탁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사업비로 비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7. 국제교류협력 강화: 국제기구 외부감사 수행 관련 세입·

세출예산의 명확한 반영 필요

- 국제교류협력강화(1135-322)는 각종 국제회의의 개최·참석 및 외국 감사원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형 사재판소와 같은 국제기구의 회계감사·성과감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감사원의 국제적 위상 및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액 10억 2,500만원보다 1억 500만원(△10.2%)이 감액된 9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제교류협력강화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결산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증 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
국제교류협력강화	1,011	1,025	1,025	1,371	920	△105	△10.2

* 자료 : 감사원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도 결산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 합계	1,054	1,011	43	1,025	920
- 일반수용비(210-01)	121	119	2	107	113
- 공공요금및제세(210-02)	7	7	-	10	10
- 임차료(210-07)	62	62	-	73	56
- 시설장비유지비(210-09)	3	2	1	3	3
- 일반용역비(210-14)	136	134	2	134	-
- 국내여비(220-01)	12	5	7	-	-
- 국외업무여비(220-02)	517	491	26	516	545
- 사업추진비(240-01)	20	19	1	14	14
- 관서업무추진비(240-02)	50	46	4	50	50
- 국제부담금(340-02)	126	126	-	118	129

* 자료 : 감사원

- 감사원은 동 세부사업에 편성된 ‘국제기구 외부감사인 진출 추진’ 사업을¹⁸⁾ 통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제기구 외부감사인 선임을 추진하여 왔고, 2026년에는 다음과 같이 국제형사재판소 등 3개 국제기구의 외부감사를 수행할 예정임.

<감사원이 외부감사인으로 활동·진출한 국제기구 현황>

(2025. 10. 기준) (단위: 백만원)

국제기구	관련 2026년도 예산 편성액		비고
	세입 ¹⁾	세출 ²⁾	
국제형사재판소(ICC)	116	313	수행 기간 연장 (2025. 7. - 2029. 6.)
세계감사원장회의(INTOSAI)	-19)	49	2026. 신규 (2025. 7. 선정)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미 편 성	미 편 성	2026. 신규 (2025. 11. 선정 유력)
감사원추정치	(48 ²⁰⁾)	(49 ²¹⁾)	

* 자료 : 감사원

1) 세입 중 기타잡수입(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13-69-691)으로 편성 2) 국제교류협력 강화 세부사업에 편성

- 감사원이 국제기구 외부감사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외부감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세부사업에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하게 되며, 외부감사 수입 대가로 받은 수수료 상당액은 세입 중 기타잡수입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13-69-691)으로 수납됨.

18) 국제교류협력강화(1135-322) 사업의 내내역 사업으로서, 내역 사업인 “기타 국제교류” 사업 내에 편성되어 있고, 2026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2025년 예산 9,200만원) 5,300만원 감액된 3,900만원이 편성됨.

19) 감사원에 따르면 세계감사원장회의에 대한 외부감사 수수료 수입은 없음.

20) 감사원 추정치이며, 대략 30,000유로(1유로=1,590원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함.

21) 감사원 추정치로, 지출 예상 국외업무여비 및 일반수용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임. 참고로 감사원에 따르면 외부감사를 실시할 감사관 5인 기준 중간감사(7일, 상반기)·기말감사(14일, 하반기) 2회 실시 예정이며, 동일 국가(네덜란드) 소재인 국제형사재판소 회계·성과감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항공료는 2026년 예산안에 편성된 국제형사재판소 왕복 항공료로 같음할 예정으로 설명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2025년 11월경 새롭게 위탁받을 예정인²²⁾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외부감사 관련 세입·세출 예산소요액이 2026년도 소관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함²³⁾.
- 따라서, 감사원이 외부감사를 예정대로 수행하게 되는 경우 2026년에는 세입의 초과 수납 및 세출의 조정을 통한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임.
- 그러므로 감사원의 국제기구 외부감사 세입·세출내역을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2026년도 소관 예산안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감사원은,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세입예산 4,800만원 증액, 세출예산 4,900만원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22) 다만, 2026년부터 실시 예정임.

23) 예산요구(2025. 5.) 및 정부안 편성(2025. 8.) 당시에는 수입 여부가 불확실했으며, 11. 12. 상설위원회의 동의로 결정될 예정임